

第4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5月22日(월) 午前09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面

(10時00分 開議)

○議事係長 鄭恩洙 지금부터 시민복지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安敦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の件(城北區廳長提出)

(10時01分)

○委員長 安敦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시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의안으로 오늘 다시 재심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보다는 崔石根專門委員께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죠.

○專門委員 崔石根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한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사무가 대폭 위임된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별첨 부표 목록 위임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모든 상위법에 합당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사항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고 위임을 확대함에 따라서 인력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관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시에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 그래서 각 과장님이나 해당 실무계장이나 책임을 맡고있는 관리자에게에 대한 직무와 정신교육을 아주 강화해서 민원인의,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일층 노력해서 보건행정회 획기적인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1항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모든 책임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청장은 구체적 업무감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감독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권한위임과 재위임이 어떻게 다르냐, 재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4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러니까 권한위임은 승인이 필요없고 재위임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위임을 받은 사무같으면 구청장이 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난후에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해야 된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위임과 재위임이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敦洙 지금 崔石根專門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의견을 들으셨는데 검토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보건소에서 일반행정을 하고 구청장한테 직인을 받던 것을 보건소장의 직인으로 이렇게 위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韓春子委員 질의할 내용도 없을뿐더러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이 하시던 것을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깨끗하게 우리가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안전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敦洙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金正圭委員 韓春子委員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가지 조금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차 회의때 그 과정, 왜 통과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 과정과 또 이 안전내용은 통과를 해야만이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될 사항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공식, 회의를 속개한 공식석상에서 사과가 있는 연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敦洙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金正圭委員 지금 회의가 정식으로 속개하고 있으니까 일차에 왜 어떤 사항에 의해서 그때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애

기하고 설명을 누가 하든지 해야지.

○委員長 安敦洙 소장님이 의안 자체를 늦게 올려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의 착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保健所長 朴聖百 본 안전을 너무 촉박하게 올린 데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敦洙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안전에 대하여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0分 散會)

○出席委員 6人

安 敦 洙	崔 相 烈	金 正 圭
崔 哲 模	洪 清 一	韓 春 子

○缺席委員 4人

權 赫 驥	李 明 煥	金 榮 植
金 鍾 煥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

○參席公務員 2人

保 健 所 長	曹 宗 希
保 健 行 政 課 長	朴 聖 百